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성농어업인 농어업기계 및 편이장비 지원 근거
신설 등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21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 의견	2
1. 여성농어업인 농어업기계 및 편이장비 지원 근거 신설	2
2.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미이용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3. 27.
3. 회 부 일 : 2026. 3.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생산활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영농·영어 작업과 함께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부담이 크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의 우려가 높아 농어업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 특수성 등으로 영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여성농어업인 농어업기계 및 편이장비 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및 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와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3. 귀농·귀어·귀촌 여성, 청년여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4.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영어(營漁) 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 -----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작

현행	개정안
6.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 장비 지원 6. (현행과 같음)

2025년 우리나라 농림어가 인구 중 여성은 49.7%를 차지¹⁾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어업 기계가 남성 신체에 맞춰 설계되어 여성농어업인에게 과도한 근골격계 부담을 유발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실제로, 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유병률이 남성농업인 보다 1.5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농업인의 업무상질병 유병률 현황]

구분	유병률						2024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농업인 수	업무상질병자
총계	5.2%	5.1%	4.8%	5.0%	5.3%	5.8%	1,777,900명	103,463명
남성	4.1%	4.4%	4.0%	4.3%	4.5%	4.6%	893,111명	40,916명
여성	6.5%	5.8%	5.6%	5.8%	6.3%	7.1%	884,789명	62,548명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국가승인통계 143003호)

1)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6. 4.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부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술이전 계약수량은 14,719대로 2024년 여성농업인이 884,789명임을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으로 보임.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 현황]

연도	개발 항목	기술이전 계약수량(대)
2021	보행용 중경제초기, 고추지주대 설치·제거기, 등검은 말벌집 드론 퇴치기, 농산물 탈수장치 등 7종	2,869
2022	딸기 수확운반 대차, 스마트온실 방제로봇, 승용 자주식 마늘 수집기, 스마트 온실 방제 로봇 등 5종	1,486
2023	과원용 지능형 제초기, 시설용 작업자 추종 운반차, 승용 자주식 마늘 파종기 등 5종	1,097
2024	배종인식 감자파종기, 드론용 변량 살포장치, 시설용 병충해 모니터링 장치 등 5종	9,197
2025	반자동 양파 정식기, 보행형 자동 고추 정식기, 2조식 반자동 엽채류 정식기 등 5종	70
합계	총 27종	14,71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12.23.기준

또한, 농작업의 편이와 안전을 위한 장비도 개발·보급하고 있는데 해당 장비들은 여성을 위한 장비라기보다는 농작업 전반의 편이·안전을 위해 개발·보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친화적 장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임.

[농작업 편이·안전 장비 개발·보급 현황]

연도	개발 항목	기술이전 계약수량(대)
2021	기능성 농약 방제복	105,000
	회전식 손잡이 수확상자	30,000
2022	축산 작업자용 작업복	1,600
	축산 작업자용 보호신발	6,000
2023	농업기계용 안전반사장치	450
2024	-	-
2025	온열질환 예방 키트	10,000
합계	총 7종	162,0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을 위한 여성친화형 어업기계 및 편이장비를 별도로 개발·보급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볼 소지가 있음.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이장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작업 부담을 경감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어업활동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여성어업인의 경우 특화된 어업기계와 편이장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여성어업인을 위한 어업기계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 제9조제5호에서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 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신설 조항이 기존 규정과 실질적으로 중복될 수 있음. 조문 체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기존 제5호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농어업기계 및 편이장비 지원 내용을 명시하거나, 두 호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률에 지원 근거를 명시하더라도 실질적인 예산 확보 없이는 선언적 규정에 그칠 우려가 있음. 농어업기계 및 편이장비의 개발·보급은 일반 농기계 지원과 달리 여성 신체에 적합한 설계 및 별도의 연구·개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미이용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여성농어업인이 지역적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현금 또는 농식품이용권으로 여성농어업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 사업의 시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람(이하 “도우미”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우미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 사업의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지역적 특수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우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해당 여성농어업인에게 현금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2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u> <u>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대상</u>

현행	개정안
	· 범위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할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및 육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여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을 보호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지자체 사업)과 ② 임신·출산·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활동지원 사업(해양수산부 사업)이 있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경우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각 시도별 자체 계획에 따라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되고 있음. 2026년 현재 농가도우미 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시·광역시에는 없으며, 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道)는 도 전체가 아닌 일부 시·군에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시·도별 어가도우미 지원현황('26)]

(단위:원)

시도명	지원기간(일)	1일 기준단가(자부담)
경기	90	100,416(0%) * 용인, 평택, 광주, 양주, 안성,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실시
충북	80	평균 74,740(15~30%) * 영동, 괴산, 음성 실시
충남	45~60	50,000~100,000(0~20%) * 서산, 금산, 부여, 청양, 예산 실시
전북	100	90,000(10%) * 전주 미실시
전남	70(여성) 20(남성)	80,240(20%) * 목포, 여수, 무안 미실시
경북	90(여성) 10(남성)	90,000(20%)
경남	90	81,000(15%) * 창원, 김해, 양산 미실시
제주	70	80,24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어가도우미의 경우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일 최대 12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지원되고 있음.

다만, 어가도우미 사업 중 임신·출산으로 도우미를 신청한 건수는 2025년 기준 2건에 불과함.

[2025년 어업활동지원사업 중 여성어업인 지원 현황]

(단위:명, 일)

지자체	계	임신	출산	기타(질병 등)	지원일수
계	27	1	1	25	773
전남	22	1	1	20	50
제주	2	-	-	2	57
경남	1	-	-	1	30
인천	1	-	-	1	16
전북	1	-	-	1	620

자료: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이처럼 여성농업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어서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효과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지원범위의 실질적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른 현금 등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 있어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다른 업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농가도우미 외에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분만취약지 산모 추가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와 중복 여부 및 연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현황]

구분	지원내용
농가도우미 지원 (농식품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영농 중단방지 및 모성보호를 위해 지자체별 1일 4~6만원(0~20%자부담), 30~90일 한도내에서 지원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시설비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산부인과 시설비 등 지원 * 분만취약지역 선정기준 : ① 60분내 분만의료 이용률 30% 미만이고, ② 60분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 30% 이상인 지역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지원 (보건복지부)	단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둘째, 개정안은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현금 또는 농식품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우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수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을 보임.

개정안은 도우미를 이용하고 싶으나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우미 이용에 갈음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농식품이용권은 식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어 대체인력 확보나 도우미 비용을 직접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현금 지급은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우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별도의 이용권의 도입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5